



[2020. 5. 14.] [2020 - 63 , 2020. 5. 14.,]

(), 044 - 200 - 5833

1

1 () 「 」 26

2 ()

1. " " 750 가

2. "가 "

3. " " (隔壁)

4. " (鋼) " " " 가 ()

5. "A " 가.

. 60

6. "B " 가.

. 30

7. "C " C

8. " B " A B B

9. " B " A B B

19 2. " " , 10
가 ,

19 3. " " .

20. " " .
가.
. 375
. 가

21. " " ()
(가 , ,)
, 0.18 /)

22. " " , , , (, , ,)
, , 가), , (減搖) ,
가 , (, , ,)
가)

23. " " , (, , ,)
) ,
가 , , , ,

23 2. " " 2

23 3. " " .
가.
. ,
.
.
.
.
.
.

23 4. " " 3

23 5. " " (가) 가 80
120 .

23 6. " " , .

23 7. " " .
 23 8. " " 가
 24. " " .
 25. " " , 가 가
 가. " " .
 " " .
 " " .
 26. " " , 가 가
 가 가
 가. " " 가
 " " .
 " " .
 27. " " .
 3 () A B [
 가 140
 180 (B 225)
]

종 류	방 열 시 간
A60급	60분이상
A30급	30분이상 60분미만
A15급	15분이상 30분미만
A0급	15분미만
B15급	15분이상
B0급	15분미만

4 ()

5 () < 2015. 9. 9 >

「 」
「 」

2

6 ()

7 () , , ,

1

(頂部) (Casing)

< 2002. 11. 14 >

1. A A 60

가 (2 3) 200

2. B B 30

가 200

3. , 60

가 200

8 () , (36

) A60

가

A0

1.

2. 가

3. () 가

가

9 () A60

가

A0

가

1

2

2

3

1

2

36

B (B B)

2

4

7

가 가

가

가

10 (B) 9 B [

(" ")

36

]

B

9

B

(

36

3

)

,

가

가 B

가

(

"B ")

B B
B
11 () (鋼製) ()

A
1. 2
2. 가
1
1.
2.
3. 가
4. , , , , , ,

(Lobby) 4.5
가 900
1
1 1 9 1 2
()

12 (A) A (Trunk) (Duct) (Girder)
A (,)
2 가 가 가
, 36 가
B 가 A
가
A ()
("A ") (

) 1 3

1.

2. 가 . , .

3.

4.

5. A 12 ,

가

, 가 A ()

1. 3.5

2. (Hinge) 10 40

3. (Sliding) 0.1 0.2 가

4. () ,

(On - Off) 가 가 -

5.

6. 가 .

7. 가

8.

9.

10

10.

11.

가 5 10

12. 1

13. (Double - leaf Door)

14.

15. 가 ,

가. 200 60
가
가 200
945 가

A 5
4 11
A (, 가
) 가 150 , 150
, A 가 .

13 (B) B

1. . . .
2. .
3. .
B ()
("B ") . ,

1.
2. 가
3. B 25
가 B ,

B
1. 0.05
2. 가
B 가 가 가

14 () ()
) 가 .
36 , .
가 가 가 ,

가
A0

가

5

36

A0

가

(Bead)

(Angle)

15 ()

1.

600

(flexible bellows)

6

2

(가

) 0.02

가.

(

ISO

1716:2002,

)

45 가

가

가 A

B

(

B

)

600

2.

71

(FTP Code)

가.

A

가

3.

가

가

가

4.

가

5.

6.

가

가

A

B

600

A

가

7. 가 , 13 (B)

1. , , , , ,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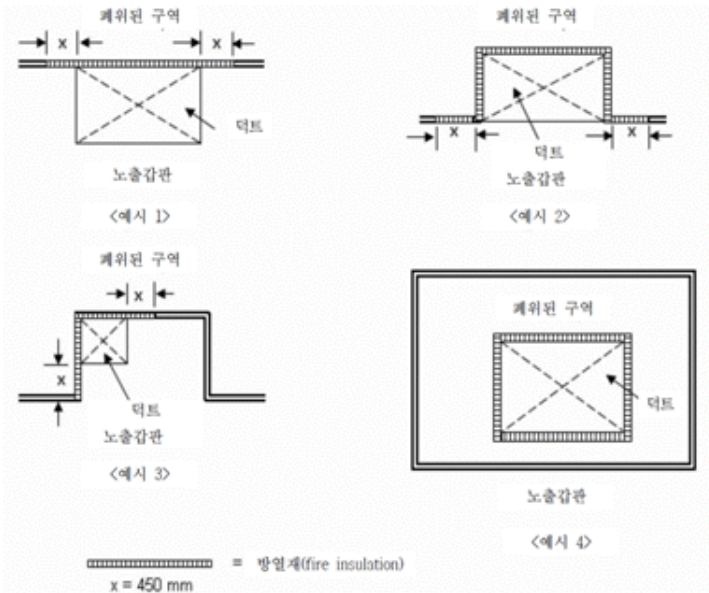
2. 가 , , , , , 4

3. , , , , , 4

4. 2 3 가 가 . 0.075 3 , 0.075 0.45 4 , 0.45 5 가

. 가 5 A60 . 1 (9) (10) . A60

5. 4 , 450



)

6. 가 , 가

4 가

가

가 가

1. A

가. 0.02 가 A 3

200

, 가

100

가

0.02

0.075

가 A

3

900

가

가

450

가

가

0.075

A

가

1)

2)

가

3)

가

가

가 A

가

가

가

4) 0.075 A

2. B 0.02 900

450

3. 450 가 가

가

36 1 3 가

1. 가

2. ()

3. (tween - deck) , 가 가

가 가

4. , 1 2

36

1. 1 3 가 2 4 A60

가 가

가

가 가

가
2. 가 가

가 1
36

1. 가 , 2 4 가

가.

가

가

1.

2.

가

A0

36

1

(13)

1.

2.

3.

4.

16 ()

1. 10

2.

17 () 36

1.

2.

18 ()

,

.

1

가 2

1 2

가

(,

)가

가

가

가

19 () A

B

A

가

950 , B

가 850

가

,

1.

,

2.

60

20 (

)

60

21 (

)

14

1

가

22 (가

)

(Grounds) .

(

)

가가

가

가

가

2.5

가 가

1.

2. , (), (가)

3.

5

45 가

(Vanish)

가

1

가 (

10)

가

가

가

가

1.

가

2

가

2.

가

3.

0.8

/

4.

가

가

5.

가

23 ()

1.

가

2.

1.

2.

가.

3.5

가
가

가

1.

2.

3.

가

1. 5

2.

3. 「 」 144 4

4. , , , 가

24 () ,

1.

2. 10

3.

4.

5. 가

6. 가 가

()

가

(가)

가

1. 가
2. CDG()
3. (IMDG Code)

24 2()

A60

가

24 3()

24 4()

36

1

1. 가
- 2.

24 5() 2010 7 1

120

3

3

25 ()

1. 2007. 7. 11
2. 2007. 7. 11

26 ()

A60

가

A0

[()]

8

1

1 2 . , 36

가 1

1 2

가

가 1

1 2

1 4

2 가

가 A0

9 4 . 5 7 1 5

27 ()

가 가

28 (가) 가 가

가

1,000

가

29 ()

7 , 9 6 , 10

22 (11 2 2 4 , 12 5 9 12 . 15 7 , 13 3 ,

15 2 6 , 4 1 22 9 . 10) , 23 , 24 , 24 2

24 3

22 (9 . 10)

1,000

4 "가

가 " "가

"

7 22 7

1,000

. , 「 」 4

7

12 1 4 24 1 1 4 . 6 24 4 . 5

가

12 3 " 36

" " " , 24 4 "

" " "

12 5 1

4 500

30 ()

(" ")

500

. , 31 , 32 1 . 2 , 34 , 35 3 , 37

38

(6)

1.

2. [60 (Reid Vapor Pressure)

(3 가 4

) .)]

3. 가 (「 」 2 2 가 가

.)

4. (「 」 2 2

.)

31 ()

1. 1 : B C

2. 2 : 가 가 ,

3. 3 : 가 가 .

, A B 50 ()

32 () , , , .
A B 7 2

33 () (. . , ,
가) 3 , 9
4 6 . 9 3 " 1" " 3" .
(. . , 가
) 4 , 9 4 6
. 9 3 " 2" " 4" .
B , B

34 () ,
1 A , 2
1 33 1 A B
2 12 가 3
2 가
2 "A " "B " .
A
2 4
. , 2

35 () 12 1 4 13 1 2
500
가
2 34 5 ,
가 13 4 1 2
32 1 A

36 () 500 15 1 3 7 .
, 15 2 1 36 4,000

37 (가) 1 .
2 3 .

38 () ,
가 , 가 가 가

()
가

가 .
2.5

4
45 가

, 1 ,

39 () 23 1 . 2 . 4 5 500
23 6

40 ()
1.
2.1 6 (가)

3.

4.

5. 가

6. 가

36 2 ()

, (가)

40 2(가 가

) 가 가

40

가 가

, 2 가 , 가

가

가 가

1. :

.(, IEC 60079)

2. :

가. ,

가

3. :

가

1. :

.(, IEC 60079)

2. :

가. ,

가

가

3. :

41 () 18 21 1 . 2 24 2 500 ()
19 , 20 24 7 , 24 2 500 ()

5 500

42 () 500

43 () 31 1

44 () , ,

375 ()
가)

45 () (" "

1.

2. 가

(Blind

Flange)

1.

2. 가 가 , 가

가

가

46 () ()
)
 () 3 1
 , 25,000
 2 1

47 () () 가
 . 44 1 . ,
 . ,
 . ()
 가 가

48 () () 가
) 5 9 4 6
 . 3 " 1" " 5"
 (가)
 6 , 9 4 6
 3 " 2" " 6"

49 () ()
)
 1. A60 가
 2. , (가
)
 가. (, , ,),
 . 가 A60
 3.
 가. , 가
 . A60 가

4. 가

() 25

1(5 5) 3

1. 3 A60 A 가

2. 1 2 4

50 ()

, 가 가 가

가

1.

2.

가

3. ()

3 12 5 (4 5)

51 ()

1. 가

2.

52 ()

1. 20

2.

3.

53 () ()

()

54 ()

300

가 1

55 () 18 21 1 · 2 , 23 1 · 2 · 5 , 24 2, 32 ,
33 3 , 34 36 , 37 1 , 38 , 39 2 500 ()

19 , 20 , 23 1 · 2 · 5 , 24 2, 32 3 , 35 1 · 2 · 4 ·
5 , 36 , 38 6 39 2 500 ()

6

56 () 가 (" ") 30

1. < 2007. 7. 11 >

2. < 2007. 7. 11 >

57 () 가
3 4 , 9 4 · 5 7

9 4 " 1 2" " 3 4"

1

2

가

가

A0

58 () (가)

59 () 22 7 , 35 1 · 2 · 4 5 ,

40 1 1 4 · 6 4

35 2 1

60 ()

가

, 가
, , ,
가

2

1

3

61 ()

1.

A60

2.

가

가.

(Cantilever)

가

가 ,

가

3.

,

가

4.

,

5.

가.

,

가

가

가

가

가

" "

24 1

가 (Non Sparking)

151 154

62 ()

63 ()

가

가 (層狀化) (air pocket)

1 2

64 ()

1.2

2.

가 가 2

가 가

5

3.

가 [(Gangway) 4 가
] 6 (30
2)

가

가 10

가

4. 가

500

1

1

가

가

65 () , 가

500

(Cellulose - Nitrate)

1. ()

2. 0.6 , 1.2

3.

4. 가

3.5

10

66 ()

1.

2. 가

3. 2 , 0.3

,

0.6

,

0.9

4. 2

0.3

,

0.9

5.

0.3

6.

1

7.

가

67 ()

가

가

68 ()

가 .

69 ()

36

(36)

1. ,

2. .

3. , , , ,

4.

5.

70 () 가 , ,

500 . ,

1 .

1.

2. A

3. B

4. . .

5. (,

)

6. (

36)

1 , 1

1 3

1 3 2

71 ()

(FTP Code) .

72 () 「 . 」

2020 1 1 3 (3 12 31)

< 2009 - 585 ,2009.8.10.>

< 2011 - 740 ,2011.12.1.>

< 2012 - 470 ,2012.7.31.>

< 2013 - 71 ,2013.5.7.>

< 2014 - 54 ,2014.5.20.>

1 ()

2 ()

3 () 3 4 2014
7 1

< 2015 - 140 ,2015.9.9.>

1 ()

2 ()

3 () 15 , 29 36 2016 1 1

< 2019 - 171 ,2019.11.20.>

1 ()

2 () 2 , 14 2020 1 1
120 3

25 5

< 2020 - 63 ,2020.5.14.>

1 ()

2 () 40 2 2

40 2 3 , 4 2016 1 1

[별표 1]

주수직구역의 경계가 되지 아니하고 수평하구역의 경계도 되지 아니하는 격벽(제9조)

장소	장소	(14) 가연성 액체를 수납하는 기타 장소	(13) 저장품실 등	(12) 기관구역 등	(11) 화재의 위험이 중간 정도인 보기실 등	(10) 화재의 위험이 적은 보기실 등	(9) 위생구역 등	(8) 화재의 위험이 많은 거주구역	(7) 화재의 위험이 중간 정도인 거주구역	(6) 화재의 위험이 적은 거주구역	(5) 개방된 갑판상의 장소 등
(1) 제어장소 등		A60	A60	A60	A60	A0	A0	A60	A60	A60	A0
(2) 계단 등		A30	A15	A30	A15	A0	A0 ⁸	A15	A15	A0	A0
(3) 통로 등		A30	A0	A30	A15	A0	B15	B15	B15	B15	A0
(4) 승장소 등		A60 ²	A60 ²	A60 ²	A60 ²	A0	A60 ⁴	A60 ^{2,4}	A60 ^{2,4}	A60 ^{2,4}	A0
(5) 개방된 갑판상의 장소 등		A0	A0	A0	A0	A0	A0	A0	A0	A0	
(6) 화재의 위험이 적은 거주구역		A30	A0	A30	A0	A0	C	B0	B0	B0	
(7) 화재의 위험이 중간 정도인 거주구역 등		A60	A15	A60	A15	A0	C	B0	B0		
(8) 화재의 위험이 많은 거주구역		A60	A15	A60	A30	A0	C	B0			
(9) 위생구역 등		A0	A0	A0	A0	A0	C				
(10) 화재의 위험이 적은 보기실 등		A0	A0	A0	A0	A0 ¹					
(11) 화재의 위험이 중간 정도인 보기실 등		A15	A0	A0	A0 ¹						
(12) 기관구역 등		A60	A0	A0 ¹							
(13) 저장품실 등		A0	A0 ¹								
(14) 가연성 액체를 수납하는 기타 장소		A30									

비 고

1. 한 장소의 내용 및 용도로 보아 그 장소의 분류가 불확실한 경우 또는 2개 이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는 관련된 범주 중 가장 상위의 경계요건이 적용되는 범주에 속하는 장소로 간주하여야 하며, 한 구획 내에서 30퍼센트 이하의 통로개구를 갖는 폐위구역은 분리된 구역으로 간주한다.
2. 표중 범주 (1)에서 (14)까지의 장소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어장소 등

- 가. 비상동력원 및 조명원이 있는 장소
- 나. 조타실, 해도실
- 다. 무선기기가 있는 장소
- 라. 화재제어실
- 마. 추진기관이 있는 기관구역 외부에 위치하는 추진기관 제어실
- 바. 화재경보장치를 집중배치한 장소
- 사. 중앙집중식 선내방송장치를 설치한 장소

(2) 계단 등

여객 및 선원용의 선박내부 계단, 승강기, 완전히 폐위된 비상 탈출용 트렁크 및 에스컬레이터(기관구역에 완전히 포함된 것은 제외한다.) 및 그 주위의 벽. 이 경우 한쪽의 갑판에서만 폐위된 계단은 방화문에 의하여 격리되지 아니한 장소의 일부로 본다.

(3) 통로 등

여객 및 선원용의 통로와 로비

(4) 승정장소 등

- 가. 생존정 탑재구역.
- 나.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의 승정장소, 조작장소를 형성하는 개방된 갑판상의 장소와 폐위된 유복장소

다. 내부소집장소 및 외부소집장소

라. 탈출경로로 이용되는 노출부의 계단 및 개방된 갑판

마. 구멍뚫목 승정장소 및 강하식탑승장치의 승강장소와 인접하고, 그 하부에 위치한 최소항해흘수선까지의 선체측부와 선루 및 갑판실의 측부

(5) 개방된 갑판상의 장소 등

개방된 갑판상의 장소 및 폐워된 유보장소[(4)의 승정장소 등을 제외한다]. 이 경우 폐워된 유보장소는 현저한 화재 위험이 없도록 비품은 갑판상 가구로 한정하여야 하며, 영구적으로 설치된 개구에 의하여 자연통풍되어야 한다.

(6) 화재의 위험이 적은 거주구역

가. 화재의 위험이 적은 가구 및 비품을 비치한 선실

나. 화재의 위험이 적은 가구 및 비품을 비치한 사무실 및 진료실

다. 화재의 위험이 적은 가구 및 비품을 비치한 공용실로서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

(7) 화재의 위험이 중간정도인 거주구역등

가. 범주(6)에서 예시한 장소로서 화재의 위험이 적은 가구 및 비품이외의 것을 비치하는 선실

나. 화재의 위험이 적은 가구 및 비품을 비치한 공용실로서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장소

다. 거주구역에 있는 바닥면적 4제곱미터미만의 독립된 로커 및 소저장품실(인화성 액체를 보관하지 아니하는 곳)

라. 매점, 영사실 및 필름 보관실, 소조리실(나화염을 사용하지 않는 곳), 청소 용구함(가연성액체를 보관하지 아니하는 곳), 실험실(가연성액체를 보관하지 아니하는 곳), 약국, 소견조실(바닥면적 4제곱미터 이하의 장소), 금고실, 수술실

(8) 화재의 위험이 많은 거주구역

가. 화재의 위험이 적은 가구 및 비품이외의 것을 비치하는 공용실로서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장소

나. 이발실 및 미용실

다. 사우나실

(9) 위생구역 등

- 가. 공용 위생 설비실, 샤워실, 욕실, 화장실
- 나. 소세탁실, 선내수영장
- 다. 거주구역에 있는 조리용구가 없는 독립된 식기실
- 라. 개인용 위생설비는 그것이 위치하는 장소의 일부로 간주함.

(10) 화재의 위험이 적은 보기실 등

- 가. 선체구조의 일부를 형성하는 물탱크
- 나. 공소 및 코퍼댐
- 다. 강제운환장치가 있는 기계를 설비하지 아니한 보기실로서 가연성물질의 보관을 금하고 있는 곳(예를 들면 통풍기실, 공기조화기실, 양묘기실, 조타기실, 안정장치실, 추진용전동기실, 배전반과 순수한 전기설비(10kVA이상 용량의 유변압기 제외)를 비치하는 실, 축로, 관을 통과시키는 터널 및 가연성 액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펌프 및 냉동기실)
- 라. 상기의 각 장소로 통하는 폐워된 트렁크
- 마. 관 및 전선을 통과시키는 다른 폐워된 트렁크

(11) 화재의 위험이 중간정도인 보기실 등

- 가. 화물유 탱크
- 나. 화물창, 트렁크로 및 해치웨이
- 다. 냉장실
- 라. 연료유 탱크(기계류를 설치하지 아니한 독립된 장소에 있는 것)
- 마. 가연성물질의 보관이 가능한 축로 및 관을 통과시키는 터널
- 바. 범주(10)에서 예시한 보기실로서 강제운환장치가 있는 기계를 설치한 곳 또는 가연성 물질의 보관이 허용된 곳
- 사. 연료유 주입장소

아. 10kVA 이상 용량의 유변압기를 비치하는 장소

자. 터어빈 또는 왕복증기기관에 의하여 구동하는 보조발전기 및 발전기, 스프링클러, 펌프, 소화장치펌프, 소화펌프, 동력발전기 펌프 등을 구동하는 110kVA 이하 출력의 소형 내연기관을 비치하는 장소

(12) 기관구역 등

가. 주추진기실(추진용전동기실을 제외) 및 보일러실

나. 내연기관 기타 유연소장치, 가열장치 또는 펌프장치를 비치하는 범주(10) 및 (11)의 장소를 제외한 보기실

다. 주조리실 및 부속장소

라. 상기 각 장소로 통하는 트렁크 및 케이싱

(13) 저장품실 등

가. 조리실에 부속되지 아니하는 주식기실

나. 주세탁실, 잡용창고

다. 대건조실(바닥면적이 4제곱미터 이상인 곳)

라. 잡용창고

마. 우편물실 및 수하물실

바. 폐기물실

사. 작업실(기관구역 및 조리실 등의 일부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곳)

아. 인화성액체의 저장을 위한 설비를 가진 구역을 제외한 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큰 면적을 가진 로커 및 저장실

(14) 가연성액체를 수납하는 기타 장소

가. 페인트 창고

나. 가연성액체(염료 약제등 포함)가 있는 선용품실

다. 실험실

3. 표중 “A0”, “A15”, “A30”, “A60”, “B0”, “B15” 및 “C”는 각각 다음 표에 의한 구획을 표시한다.

구 분	칸 막 이
A0	A0급의 A급구획
A15	A15급의 A급구획
A30	A30급의 A급구획
A60	A60급의 A급구획
B0	B0급의 B급구획
B15	B15급의 B급구획
C	C급구획

4. 2층 갑판에만 사용되는 계단으로서 하나의 갑판간에 있어서만 폐위되어 있는 것은 다른 갑판간의 장소의 일부로 본다.
5. 개인용 위생설비가 있는 장소는 그것이 부속하는 장소의 일부로 본다.
6. 표중 견문자 “1”, “2”, “3” 및 “4”가 부여된 경우에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1”이 부여된 경우

인접하는 장소가 동일번호의 범주에 속하고 또한 표중 보존 방열성 기준에 견문자 “1”이 있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들 장소간에 격벽 또는 갑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 : 범주 (12)의 경우, 식품실의 격벽 및 갑판이 조리실의 경계로서의 보존방열성을 유지할 경우에는 조리실과 이에 부속하는 식품실간의 격벽은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리실 및 기관구역이 모두 범주 (12)에 속하는 경우에도 이들 장소간에는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2”가 부여된 경우

최소 항행 홀수선까지의 선측면, 구멍뫂목 승정장소 및 강하식탑승장치의 승강장소와 인접하고 하부에 위치한 선루 및 갑판실 측면은 A30급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 “3”이 부여된 경우

공용화장실이 전적으로 계단 폐위구역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용화장실의 격벽은 B급 보존 방열성기준으로 할

수 있다.

라. “4”가 부여된 경우

범주 (6), (7), (8), (9)의 장소가 소집장소내에 위치하는 경우 이 구역들의 격벽은 B0급으로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각, 청각 및 조명설비의 제어장소는 소집장소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다.

7. 표중 “-”는 A급구획, B급구획 및 C급구획이외의 것으로 할 수 있다.

[별표 2]

주수직구역의 계단부를 형성하지 아니하고 수평구역의 경계도 되지 아니하는 갑판(제9조제2항 관련)

갑판상부의 장소 갑판하부의 장소	(1) 제어 장소	(2) 계단등	(3) 통로등	(4) 승정 장소등	(5) 개방된 갑판상 의장소 등	(6) 화재의 위험이 적은거 주구역	(7) 화재의 위험이 중간정 도인거 주구역	(8) 화재의 위험이 많은거 주구역	(9) 위생구 역 등	(10) 화재의 위험이 적은보 기실 등	(11) 화재의 위험이 중간정 도인보 기실 등	(12) 기관구 역 등	(13) 저장품 실 등	(14) 가연성 액체를 수납하 는기타 장소
(1)제어장소 등	A30	A30	A15	A0	A0	A0	A15	A30	A0	A0	A0	A60	A0	A60
(2)계단 등	A0	A0	A0	A0	A0	A0	A0	A0	A0	A0	A0	A30	A0	A30
(3)통로 등	A15	A0	A0 ¹	A60	A0	A0	A15	A15	A0	A0	A0	A30	A0	A30
(4)승정장소 등	A0	A0	A0	A0	-	A0	A0	A0	A0	A0	A0	A0	A0	A0
(5)개방된 갑판상의 장소 등	A0	A0	A0	A0	-	A0	A0	A0	A0	A0	A0	A0	A0	A0
(6)화재의 위험이 적은 거 주구역	A60	A15	A0	A60	A0	A0	A0	A0	A0	A0	A0	A0	A0	A0
(7)화재의 위험이 중간정 도인 거주구역 등	A60	A15	A15	A60	A0	A0	A15	A15	A0	A0	A0	A0	A0	A0
(8)화재의 위험이 많은 거 주구역	A60	A15	A15	A60	A0	A15	A15	A30	A0	A0	A0	A0	A0	A0
(9)위생구역 등	A0	A0	A0	A0	A0	A0	A0	A0	A0	A0	A0	A0	A0	A0
(10)화재의 위험이 적은 보기실 등	A0	A0	A0	A0	A0	A0	A0	A0	A0	A0 ¹	A0	A0	A0	A0
(11)화재의 위험이 중간 정도인 보기실 등	A60	A60	A60	A60	A0	A0	A15	A30	A0	A0	A0 ¹	A0	A0	A30
(12)기관구역 등	A60	A60	A60	A60	A0	A60	A60	A60	A0	A0	A30	A30 ¹	A0	A60
(13)저장품실 등	A60	A30	A15	A60	A0	A15	A30	A30	A0	A0	A0	A0	A0	A0
(14)가연성 액체를 수납 하는 기타 장소	A60	A60	A60	A60	A0	A30	A60	A60	A0	A0	A0	A0	A0	A0

비 고 : [별표 1]의 비교란의 규정은 이 표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별표 3]

화물선의 격벽(제33조제1항 관련)

장소	(11) 로로구역 등	(10) 개방된 갑 판상의 장 소 등	(9) 화재의 위험이 많은 업무구역	(8) 화물구역	(7) 특정기관 구역이외 의 기관구역	(6) 특정기관 구역	(5) 화재의위 험이적은 업무구역	(4) 계단 등	(3) 거주구역	(2) 통로 등	(1) 제어 장소 등
(1)제어장소 등	A60	※	A60	A60	A15	A60	A15	A0	A60	A0	A0 ⁴
(2)통로 등	A30	※	A0	A0	A0	A60	B0	A0 B0	B0	C	
(3)거주구역	A30	※	A0	A0	A0	A60	B0	A0 B0	C ¹⁻²		
(4)계단 등	A30	※	A0	A0	A0	A60	A0 B0	A0 B0			
(5)화재의 위험이 적은 업무 구역	A0	※	A0	A0	A0	A60	C				
(6)특정기관구역	A0	※	A60	A0	A0	※					
(7)특정기관구역이외의 기관구역	A0	※	A0	A0	A0 ³						
(8)화물구역	A0	※	A0	※							
(9)화재위험이 많은 업무구 역	A30	※	A0 ³								
(10)개방된 갑판상의 장소 등	A0	-									
(11)로로구역 등	A30										

1. 한 장소의 내용 및 용도로 보아 그 장소의 분류가 불확실한 경우 또는 2개 이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는 관련된 범주 중 가장 상위의 경계요건이 적용되는 범주에 속하는 장소로 간주하여야 하며, 한 구획 내에서 30퍼센트 이하의 통로개구를 갖는 폐위구역은 분리된 구역으로 간주한다.

2. 표중 (1)에서 (11)까지의 장소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어장소 등

가. 비상전원 기타 비상동력원이 있는 장소

나. 조타실 및 해도실

다. 무선기기가 있는 장소

라. 화재제어실

마. 기관실 외부에 설치되는 추진기관의 제어실

바. 화재경보장치를 집중배치한 장소

(2) 통로 등

통로 및 로비

(3) 거주구역

거주구역

(4) 계단 등

여객 및 선원용의 선박내부 계단, 승강기, 완전히 폐위된 비상 탈출용 트렁크 및 에스컬레이터(기관구역에 완전히 포함된 것은 제외한다) 및 그 주위의 벽. 이 경우 한쪽의 갑판에서만 폐위된 계단은 방화문에 의하여 격리되지 아니한 장소의 일부로 간주한다.

(5) 화재의 위험이 적은 업무구역

건조실, 세탁실과 가연성액체를 수납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바닥면적 4제곱미터 미만인 로커 및 저장품실

(6) 특정기관구역

특정기관구역

(7) 특정기관구역이외의 기관구역

전기장비실(자동전화교환기 및 공기조화 덕트실 등) 및 특정기관구역이외의 기관구역

(8) 화물구역

화물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장소(화물유탱크 포함)와 이들 장소에 이르는 트렁크 및 창구

(9) 화재의 위험이 많은 업무구역

조리실, 조리기구가 있는 식당, 사우나실, 도료창고, 등구창고, 바닥면적이 4제곱미터이상인 로커 및 저장품실, 가연성액체를 수납하는 장소와 작업실(기관구역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다)

(10) 개방된 갑판상의 장소 등

화재의 위험이 적은 개방된 갑판상의 장소 및 폐워된 유보장소와 선루 및 갑판실 외부의 개방된 갑판상의 장소이외의 장소. 이 경우 폐워된 유보장소에는 현저한 화재 위험성이 없도록 비품은 갑판가구로 한정하여야 하며, 영구적으로 설치된 개구에 의하여 자연통풍되어야 한다.

(11) 로로구역 등

로로구역 및 화물구역으로서 연료가 주입된 자동차를 적재하기 위한 구역

3. 표 중 견문자 “1”부터 “4”까지가 부여된 경우에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1”이 부여된 경우

제2보호방식 또는 제3보호방식을 채택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C급 구획으로 할 필요는 없다.

나. “2”가 부여된 경우

제3보호방식을 채택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실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면적)를 넘는 장소 사이에는 A급 구획 또는 B급 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3”이 부여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구획으로 할 수 있다.

라. “4”가 부여된 경우

조타실, 해도실 및 무선실의 상호 경계가 되는 격벽은 B급 구획으로 할 수 있다.

마. <삭제 2014. 05. 20>

4. 표 중 2개의 구획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 것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구획의 종류는 2개중 상단의 것으로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2층의 갑판에만 사용되는 계단에 있어서 구획의 종류는 2개중 하단의 것으로 할 수 있다.

5. 표 중 “※”는 강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일 것을 표시한다.

6. 별표 1의 비고 2, 4 및 7의 규정은 이 표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별표 4]

화물선의 갑판(제33조제2항 관련)

갑판상부의 장소 갑판하부의 장소	(1) 제어 장소 등	(2) 통로 등	(3) 거주 구역	(4) 계단 등	(5) 화재의위 험이적은 업무구역	(6) 특정기 관구역	(7) 특정기관 구역 이외의 기관구역	(8) 화물 구역	(9) 화재위험 이 많은 업무구역	(10) 개방된 갑판상의 장소 등	(11) 로로구역 등
(1)제어장소 등	A0	A0	A0	A0	A0	A60	A0	A0	A0	※	A60
(2)통로 등	A0	※	※	A0	※	A60	A0	A0	A0	※	A30
(3)거주구역	A60	A0	※	A0	※	A60	A0	A0	A0	※	A30
(4)계단 등	A0	A0	A0	※	A0	A60	A0	A0	A0	※	A30
(5)화재의 위험이 적은 업무구역	A15	A0	A0	A0	※	A60	A0	A0	A0	※	A0
(6)특정기관구역	A60	A60	A60	A60	A60	※	A60 ³	A30	A60	※	A60
(7)특정기관구역이외의 기관구역	A15	A0	A0	A0	A0	A0	※	A0	A0	※	A0
(8)화물구역	A60	A0	A0	A0	A0	A0	A0	※	A0	※	A0
(9)화재의 위험이 많은 업무구역	A60	A0	A0	A0	A0	A60	A0	A0	A0 ³	※	A30
(10)개방된 갑판상의 장소 등	※	※	※	※	※	※	※	※	※	-	A0
(11)로로구역 등	A60	A30	A30	A30	A0	A60	A0	A0	A30	A0	A30

비 고 : [별표 3]의 비고란의 규정은 이 표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별표 5]

탱커의 격벽(제48조제1항 관련)

장소	장소	(10) 개방된 갑판상의 장소 등	(9) 화재의 위험이 많 은 업무구 역	(8) 화물 펌프실	(7) 특정기관 구역이외 의 기관 구역	(6) 특정기관 구역	(5) 화재의 위 험이 적은 업무구역	(4) 계단 등	(3) 거주 구역	(2) 통로 등	(1) 제어 장소 등
(1)제어장소 등		※	A60	A60	A15	A60	A15	A0	A60	A0	A0
(2)통로 등		※	A0	A60	A0	A60	B0	A0 B0	B0	C	
(3)거주구역		※	A0	A60	A0	A60	B0	A0 B0	C		
(4)계단 등		※	A0	A60	A0	A60	A0 B0	A0 B0			
(5)화재의 위험이 적은 업무구역		※	A0	A60	A0	A60	C				
(6)특정기관구역		※	A60	A0	A0	※					
(7)특정기관구역이외의 기관구역		※	A0	A0	A0 ^s						
(8)화물펌프실		※	A60	※							
(9)화재의 위험이 많은 업무구역		※	A0 ^s								
(10)개방된 갑판상의 장소 등		-									

비 고

1. 한 장소의 내용 및 용도로 보아 그 장소의 분류가 불확실한 경우 또는 2개 이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는 관련된 범주중 가장 상위의 경계요건이 적용되는 범주에 속하는 장소로 간주하여야 하며, 한 구획내에서 30퍼센트이하의 통로개구

를 갖는 폐위구역은 분리된 구역으로 간주한다.

2. 표중 (1)에서 (10)까지의 장소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어장소 등

가. 비상전원 및 조명원이 있는 장소

나. 조타실 및 해도실

다. 무선기기가 있는 장소

라. 화재제어실

마. 기관실 외부에 설치되는 추진기관의 제어실

바. 화재경보장치를 집중배치한 장소

(2) 통로 등

통로 및 로비

(3) 거주구역

거주구역

(4) 계단 등

선박내부 계단, 승강기, 완전히 폐위된 비상 탈출용 트렁크 및 에스컬레이터(기관구역에 완전히 포함된 것은 제외한다.) 및 그 주위의 벽. 이 경우 한쪽의 갑판에서만 폐위된 계단은 방화문에 의하여 격리되지 아니한 장소의 일부로 본다.

(5) 화재의 위험이 적은 업무구역

건조실, 세탁실과 가연성액체를 수납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바닥면적 4제곱미터미만인 로커 및 저장품실

(6) 특정기관구역

특정기관구역

(7) 특정기관구역이외의 기관구역

전기장비실(자동전화교환기 및 공기조화덕트실 등) 및 특정기관구역이외의 기관구역

(8) 펌프실

화물펌프가 있는 장소와 당해 장소로의 출입구 및 이들 장소에 이르는 트렁크

(9) 화재의 위험이 많은 업무구역

조리실, 조리기구가 있는 식당, 사우나실, 도료창고, 등구창고, 바닥면적이 4제곱미터이상인 로커 및 저장품실, 가연성액체를 수납하는 장소와 작업실(기관구역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다)

(10) 개방된 갑판상의 장소 등

화재의 위험이 적은 개방된 갑판상의 장소 및 폐워된 유보장소와 선루 및 갑판실 외부의 개방된 갑판상의 장소이외의 장소. 이 경우 폐워된 유보장소에는 현저한 화재 위험성이 없도록 비좁은 갑판가구로 한정하여야 하며, 영구적으로 설치된 개구에 의해 자연통풍되어야 한다.

3. 표중 “※”는 강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일 것을 표시한다.

4. [별표 1]의 비고 2, 4 및 7과 [별표 3]의 비고 2(다목 및 라목에 한한다) 내지 4의 규정은 이 표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별표 6]

탱커의 갑판(제48조제2항 관련)

갑판상부의 장소 갑판하부의 장소	(1) 제어 장소 등	(2) 통로 등	(3) 거주 구역	(4) 계단 등	(5) 화재의위 험이적은 업무구역	(6) 특정기관 구역	(7) 특정기관 구역이외 의 기관구역	(8) 펌프실	(9) 화재위험 이많은 업무구역	(10) 개방된 갑판상의 장소 등
(1)제어장소 등	A0	A0	A0	A0	A0	A60	A0	-	A0	※
(2)통로 등	A0	※	※	A0	※	A60	A0	-	A0	※
(3)거주구역	A60	A0	※	A0	※	A60	A0	-	A0	※
(4)계단 등	A0	A0	A0	※	A0	A60	A0	-	A0	※
(5)화재의 위험이 적은 업무구역	A15	A0	A0	A0	※	A60	A0	-	A0	※
(6)특정기관구역	A60	A60	A60	A60	A60	※	A60 ^가	A0	A60	※
(7)특정기관구역이외의 기관구역	A15	A0	A0	A0	A0	A0	※	A0	A0	※
(8)펌프실	-	-	-	-	-	A0	A0	※	-	※
(9)화재위험이 많은 업무구역	A60	A0	A0	A0	A0	A60	A0	-	A0 ^가	※
(10)개방된 갑판상의 장소 등	※	※	※	※	※	※	※ 가	※	※	-

[별표 7] 방열시공된 격벽 또는 갑판이 교차되는 곳 및 말단부의 처리방법(제9조제6항 관련)

구조 개소	처리 방법
<p>1. 횡보강재, 거더 등의 방열은 깊이 450mm 이하인 때에는 면재를 포함한 전체를 시공하고, 깊이 450mm를 초과할 때에는 격벽 또는 갑판으로부터 최소한 450mm 이상을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화재 시험에 따라 보존방열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방열이 시공되지 않은 격벽, 갑판, 브래킷 등 서로 교차되는 곳의 방열의 연장을 450mm 이상으로 한다.</p>	
<p>3. 방열재의 물 흡수방지를 위하여 부득이 방열재의 하부를 절단할 경우</p>	
<p>t : 방열재의 두께 d : 횡보강재 또는 거더의 깊이</p>	